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82호 2022. 10. 19.(수)

거창한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10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2-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404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4
거창군 공고 제2022-1408호 가북 감월(201호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17
거창군 공고 제2022-1409호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110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
   ○ 명 칭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면적 : 98,064㎡
   ○ 금회시행면적 : 98,064㎡
   ○ 사업내용 :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 건립[건축면적 10,835.75㎡(증621.43㎡), 연면적 35,485.82㎡(증1,620.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남도지사(경남도립거창대학)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09.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8,738	98,738					
1	거창읍 대평리	1396	학	44,266	44,26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2	거창읍 김천리	164	학	54,472	54,47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 - 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9.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2길 76-14 등 6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신촌길 6-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1404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수시로 변경가능 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답례품 우선 선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우선 선정, 예산편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고향사랑 기금 관리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결산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정함(안 제7조~제11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13. ~ 10. 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2.(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정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행정과

2) 전화 055)940-318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flyhak8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055)940-3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우선 선정)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거창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 ·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등

제3조(답례품비 예산편성)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 ·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2 - 1408호

가북 감월(201호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북면 우혜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가북 감월(201호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 가북 감월(201호선)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정비 L=430m, B=0.8~5.8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2042번지 일원

나. 물 건 : 편입 토지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 협의 및 지급 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름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89,333**	**2,054**					
1	가북면 우혜리	2042	구	93,999	71		농림축산식품부			
2	가북면 우혜리	1778-2	도	89	79		거창군			
3	가북면 우혜리	2072-2	도	3,658	457		국토교통부			
4	가북면 우혜리	1779-2	도	10	10		거창군			
5	가북면 우혜리	1365-3	도	201	165		거창군			
6	가북면 우혜리	1366-2	도	17	17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7, 103동 3102호	신동훈			
7	가북면 우혜리	1366-1	전	1,309	32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7, 103동 3102호	신동훈			
8	가북면 우혜리	산251	임	62,182	679	가북면 해평리 232	선산김씨치억6대종중			
9	가북면 우혜리	1371-2	도	221	110		거창군			
10	가북면 우혜리	산77-2	임	25,679	287	가북면 감월길 282-18	권시연			
11	가북면 우혜리	2071-2	도	449	2		국토교통부			
12	가북면 우혜리	1021	답	1,286	109	김해시 장유로344번길 76,108동606호	강석만			
13	가북면 우혜리	2064	도	218	24		국토교통부			
14	가북면 우혜리	1021-1	도	15	12		거창군			

거창군 공고 제2022 - 1409호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자체 예산집행품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 중이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제5조(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일부 개정

1) 제2호 국장 → 국장, 직속기관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3호 본청 담당관·과장 → 본청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제4호 제1관서의 과장 : 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1관서의 과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다. 전화)055-940-3242, 팩스)055-940-3219, 이메일)ssum3232@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경리담당 【☎(055)940-3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직속기관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청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1관서의 과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국장 가. ~ 다. (생 략) 3. 본청 담당관·과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1관서의 과장 : 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예산집행품의)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국장, 직속기관장 가. ~ 다. (현행과 같음) 3. 본청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1관서의 과장 :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과"란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국·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